#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75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김용판·박덕흠·박대수

유경준 · 김은혜 · 추경호

강대식 • 이주환 • 김영식

권명호 · 김형동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사업의 주무관청에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아니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도 또한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

고자 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	
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허	
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	
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u>요구하여야 한다</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2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	
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u>100</u> 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	
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	
가등의 취소를 <u>요구할 수 있다</u> .	<u>요구하여야 한다</u> .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	<u>&lt;삭 제&gt;</u>
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	
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	
리 정할 수 있다.	
<ul><li>4)・(5) (从 량)</li></ul>	(A)·(S) (청해과 간음)